

행정업무편람

일반대학원

1. 대학원 관련 규정 개정

가. 목적

-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학칙과 규정을 적정한 시기에 개정함으로써 학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

나. 관련법규

- 고등교육법 제6조
-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
- 학칙 제96조, 제96조의2

제96조(학칙의 개정)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하고, 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2. 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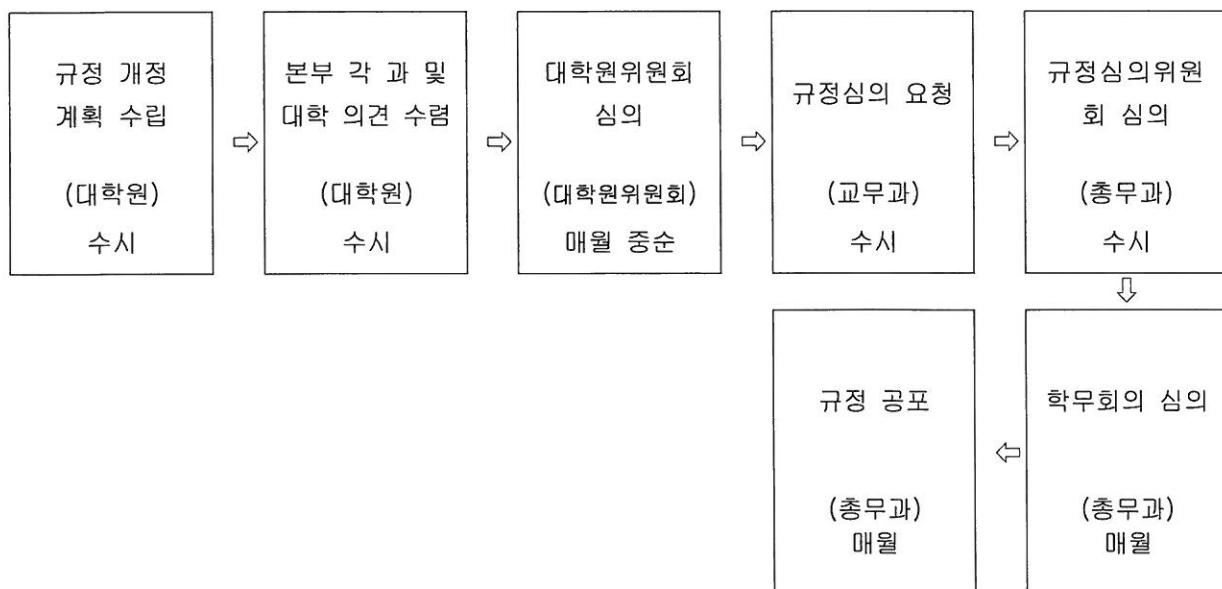
제96조의2(제 규정의 개폐) 총장은 학칙 시행을 위한 제 규정을 제정·개정·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예고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등 제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(신설 2009. 2. 23)

1. 학칙 등 상위 법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의 경미한 개정
2.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

다. 주요내용

- 개정시기 : 수시
- 개정 신청서류
 - 개정사유
 - 주요 골자
 - 신·구조문 대비표

라. 업무절차(업무 흐름도)



2. 대학원 학과(전공) 설·폐 및 학생정원 조정

가. 목적

-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수요 및 각종 사업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학원 입학정원을 조정·운영
- 정원 자율화에 따른 질적 수준 보장 연계 추진
 - 양적 팽창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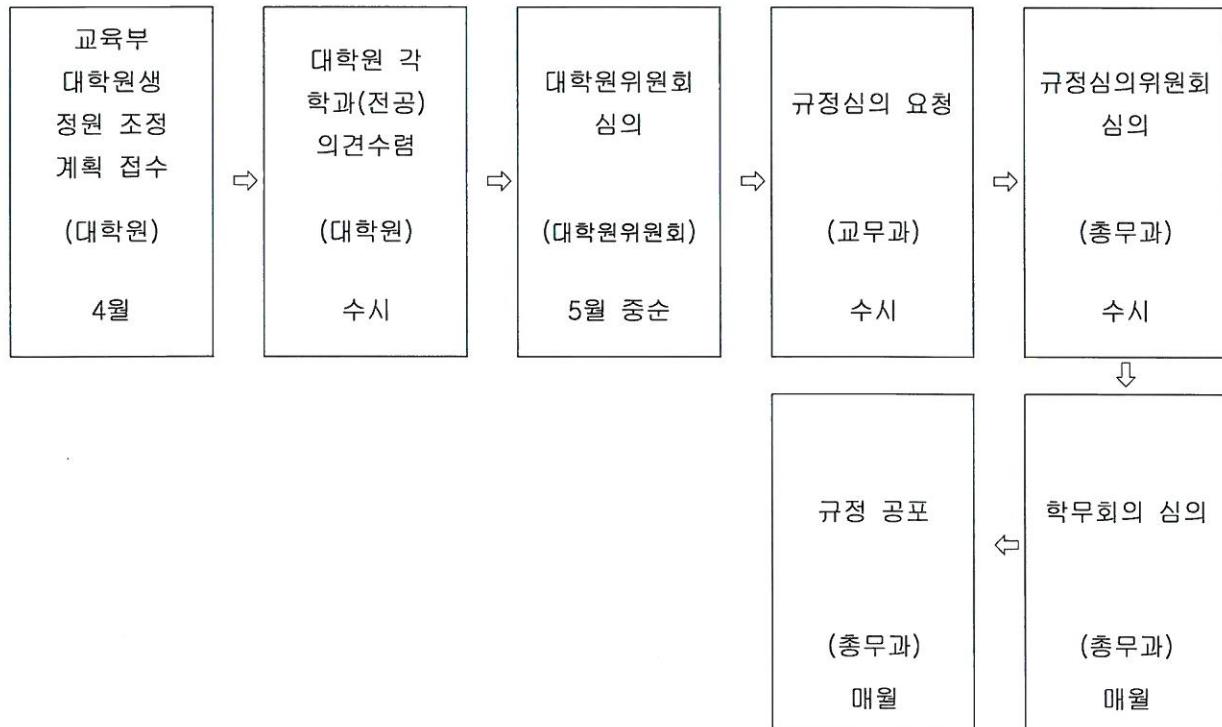
나. 관련법규

- 고등교육법 제32조
-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 ~ 제28조
- 교육부 대학원생 정원조정 계획

다. 주요내용

- 조정 시기: 년1회(매년 4~5월 경)

라. 업무절차(업무 흐름도)



3. 대학원 재입학 관리

가. 관련법규

-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의2 및 제30조제3항, 제4항
- 「충남대학교 학칙」 제49조제1항, 제76조
- 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 제46조, 제47조

나. 주요내용

- 조정 시기: 년2회(매년 12월, 6월 경)
- 지원 대상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학과(부)장의 추천을 받은 자
 -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
 -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
- 재입학 허가 가능인원: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- 재학생 수

당해학년도 입학정원 =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년 정원

재학생 수 =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(4월 1일 또는 10월 1일)

재학생 수 기준

○ 제출서류

- 재입학 지원서 1부
- 서약서 1부
-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
-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
- 재입학 추천서 1부
- 재입학자 학점인정표(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) 1부
- 학과 교수 회의록 사본 1부

다. 업무절차(업무 흐름도)



4.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

가. 목적

- 각 학과(전공)별로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 시 보완함으로써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등에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

나. 관련법규

- 충남대학교학칙 제79조
-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7조

다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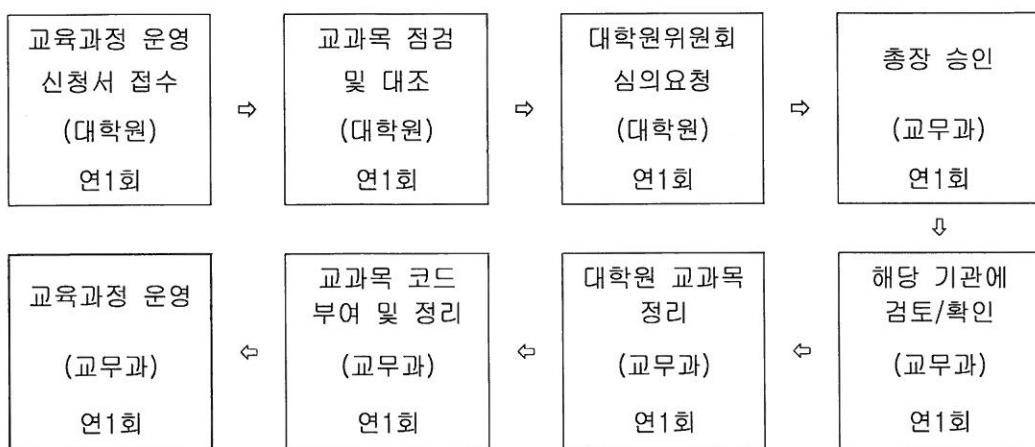
-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 수립
- 각 학과(전공)별 교육과정 신청서 접수 및 검토

※ 교육과정 편성 원칙

- 교육과정은 석·박사과정, 학·석사연계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을 연계하여 편성하며 학수구분코드를 “전공”으로 하며 모든 교과목은 3학점 이내로 편성
- 학과에서는 전공에 관련되는 기본교과목을 편성하되 석사과정은 4개 교과목 설강, 박사과정은 6개 교과목 설강이 원칙

- 교육과정 대학원위원회 심의 요청 및 통보
- 신설 교과목 코드 부여 및 시스템 정리(적용)
-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

라. 업무절차(업무 흐름도)



5.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관리

가. 목적

대학원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논문심사 절차를 마련하고,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양질의 논문을 양산하기 위함

나. 관련법규

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0조 ~ 제52조

다. 주요내용

- 논문 심사 일정 수립(2월, 8월)
- 논문 심사본 접수(4월, 10월)
- 심사 신청자 자격 검토 및 심사위원 적격성 검토
- 심사위원 심의 및 심사 결과 입력
- 학위논문 파일 등록
- 최종논문 인쇄본 접수 및 확인
- 학위 수여 자격 요건 최종 검토 및 수여 내신
- 학위수여식 업무 보조

라. 업무흐름도



6. 논문제출자격시험(외국어 · 종합시험) 실시

가. 목적

- 대학원생들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시험(외국어 · 종합시험)을 총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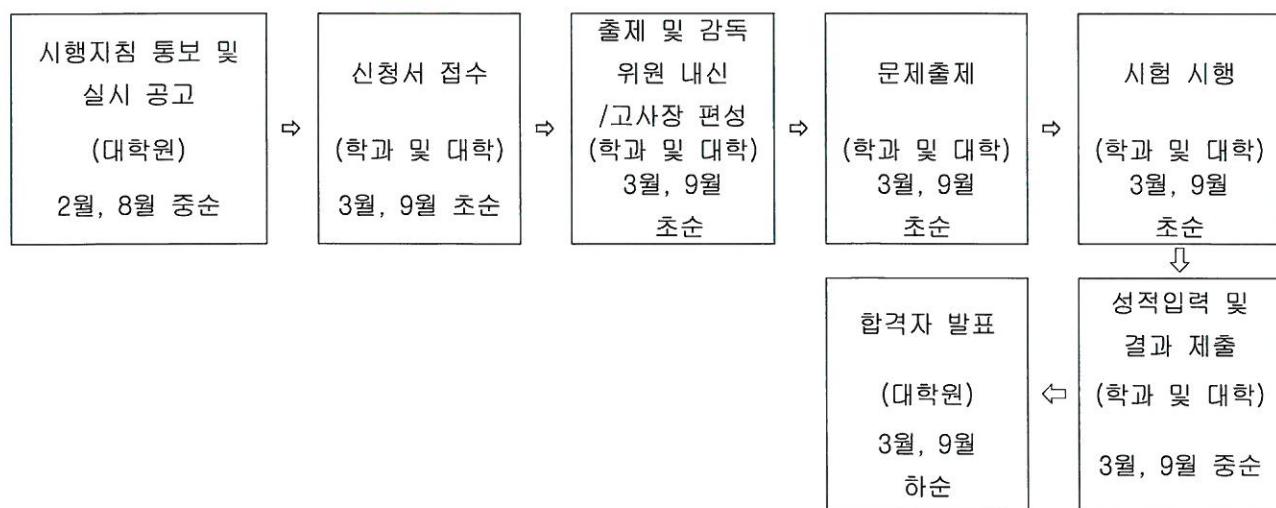
나. 관련법규

-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4조
-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3조

다. 주요내용

- 외국어시험은 공인시험 또는 외국어교육원 개설 영어과목 60시간 이수
- 논문제출자격시험(종합시험) 기본계획 수립
- 모집 공고 및 시행지침 통보
- 신청서 접수 및 통계자료 대조
- 출제위원 및 입시종사위원 위촉
- 고사장 편성 및 시험장소 공고
- 자격시험 실시
- 합격자 결정 및 발표

라. 업무절차(업무 흐름도)



7. 대학원 지도교수 관리

가. 목적

대학원 학생들의 학사 및 논문지도를 위해 입학한 후 두 번째 학기 시작 전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사 및 논문 지도

나. 관련법규

-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조~제7조

다. 주요내용

- 지도교수 배정(2월, 8월)
- 지도교수 변경사항 입력(수시)
- 공동지도교수 위촉 및 해촉 내역 입력(수시)

라. 업무 절차(업무 흐름도)

- 지도교수 신규 입력



- 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 변경사항 발생 시

지도교수변경신청서,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, 공동지도교수변경신청서, 공동지도교수해촉신청서(일반대학원 홈페이지 - 자료실 - 지도교수 관련 서식 게시)에 날인 후 해당 대학 행정실을 경유하여 대학원으로 제출

8.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운영 관리

가. 목적

-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
 - 현역입영대상자(사회복무소집대상 보충역 포함)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(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 이전) 의무 종사
- 석·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·발전에 기여

나. 관련법규

- 병역법 제36조 및 제37조, 동법시행령 제73조 및 제78조의 2

다. 주요내용

- 선발시기: 연 2 회
- 선발종류: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원 편입대상자
- 지원자격: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연구요원 선발대상자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
 -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
 -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(3년)을 35세까지* 마칠 수 있는 사람

*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병역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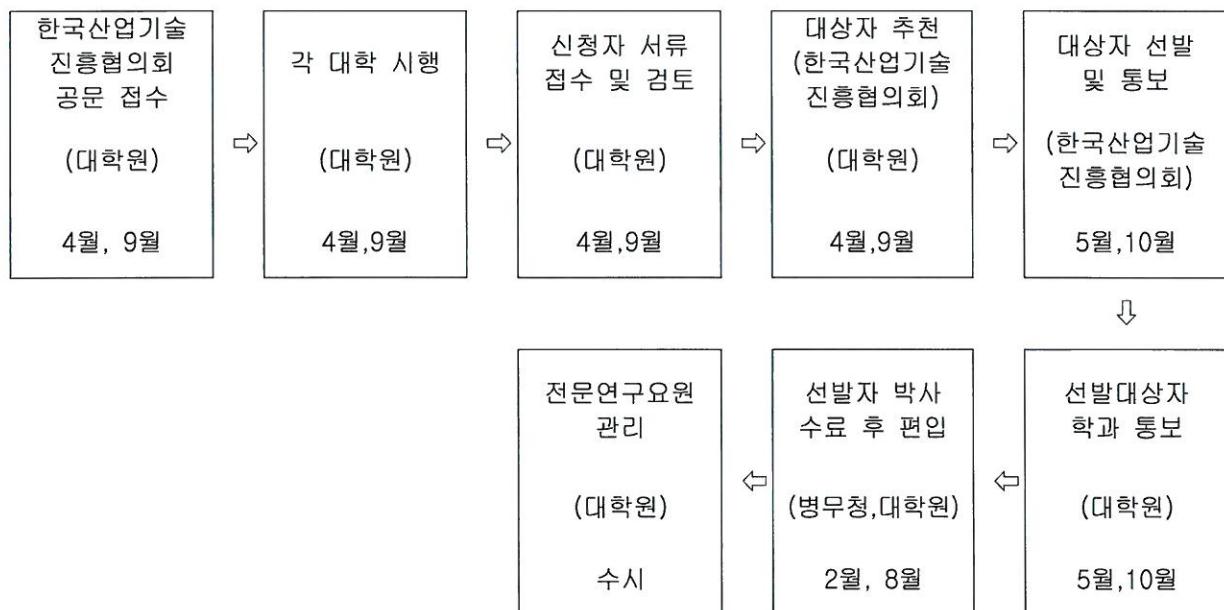
○ 선발기준

구 분	배점	비 고
공인인증시험 점수	영 어	300점 환산점수 반영
	국 사	0점 통과(PASS)
	계	300점
출신대학원 성적반영	대학원 석사과정 성적	300점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 환산점수를 반영
총 점	600점	

○ 시행기관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5조 제9항에 의거 위임

라. 업무 절차(업무 흐름도)



9. 수업 및 시간강사 관리

가. 목적

- 수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효율적 학사관리
- 교과목 설강, 편성 등 세부사항을 제공하여 수업관리의 내실화 도모

나. 관련법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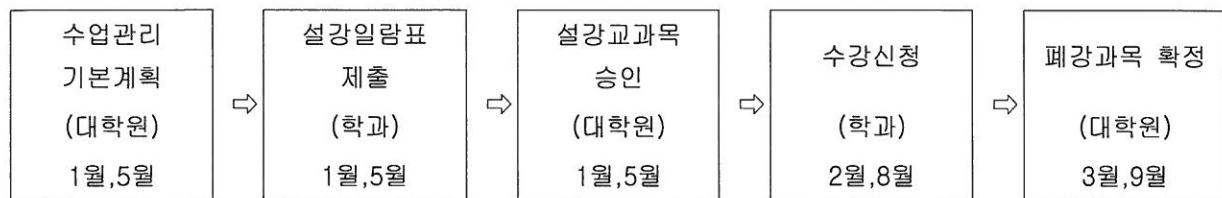
-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
- 「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24조 ~ 제26조
- 「충남대학교 시간강사 위촉 등에 관한 지침」

다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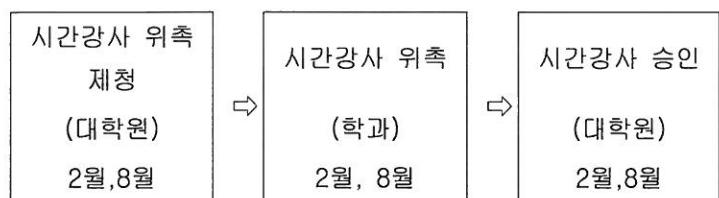
- 수업관리
 - 수업관리 주관: 모든 교과목의 수업관리는 대학원장이 주관
 - 설강교과목 확정: 대학원의 설강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됨
 - 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
 - 강의평가
 - 폐강교과목 결정
 - 결강 및 보강
- 시간강사 위촉
 -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「충남대학교 대학교원 자격 기준 인정지침」에 따라 산출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
 - 위 가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음.
 - 담당 교과목의 특성상 위 가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
 - 사계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
라. 업무 절차(업무 흐름도)

○ 수업 관리



○ 시간강사



10. 영어전용강좌 관리

가. 목적

- 대학원 전공교과목의 영어 강의를 통하여 대학원생들의 영어 능력을 배양, 생활 속에서 영어 구사능력의 향상,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해외 선진 유수 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

나. 주요내용

- 대학원 전공 교과목(공통 포함) 영어강의 활성화 및 영어 강의 비율 확대를 위해 영어강의 담당 전임 교원의 업적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
- 대학원 전공 교과목 영어 강의를 진행하여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동일한 강의를 영어와 국어로 2회 강의하는 'Bilingual'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및 추진
- 대학원 전공 교과목의 영어 전용 강의를 2013학년도 2학기에는 총 개설 교과목 수의 5%, 2014년도에는 8%, 그리고 2015년부터는 10%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 추진
- 대학원 영어강의 담당 전임교수에게 매학기 학점 당 2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(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예정)
- 지원대상: 대학원 영어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(전문·특수대학원 포함)

다. 업무 절차(업무 흐름도)

